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청년농업인을 포함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88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농촌 청년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 우선지원 규정 신설(제13조)	3
가. 제정안의 취지 및 내용	3
나. 관계기관 의견	4
다. 제21대국회 심사경과	5
라.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 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2. 4.
3. 회 부 일 : 2025. 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외소득이란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최근에는 농업소득의 성장이 정체되고 농외소득이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외소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등 농촌 여성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반면 농촌 청년에 대한 지원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농촌지역의 일자리 및 경제적 기회 부족 등으로 청년층이 농촌에서 이탈함에 따라 농가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촌 여성뿐만 아니라 농촌 청년을 우선 지원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농촌 청년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통한 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청년농업인을 포함하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안 제13조).

Ⅲ. 검토의견

1. 농촌 청년에 대한 농외소득 활동 우선지원 규정 신설(제13조)

가. 제정안의 취지 및 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에게 자금·인력·기술·교육 및 직거래 장터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청년농업인에게도 자금·인력·기술·교육 및 직거래 장터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농촌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 여성의 경제적 여권신장과 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농촌 여성에게 자금·인력·기술·교육 및 직거래 장터 등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여성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농업----- -----자금----- ----- -----.
<신 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여성농업인
<신 설>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현행	개정안
<신설>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청년농업인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지원에 관한 대상과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서 청년농에 대한 우대가 재량행위이므로 농외소득법에서 청년농에 대한 우선 지원을 의무화하면 법률 간 충돌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청년농과 그 외 농업인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2) 청년농업인단체(4-H)

청년농업인단체(4-H)는 농외소득과 관련하여 청년농업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영농 초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한 청년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농촌 정착률을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세부적인 실행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제21대국회 심사경과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의원 의원, 제2115395 호)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전체회의에 상정(2022. 08. 23.)되어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됨.

라. 검토의견

현행법은 농외소득을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통계청이 구분한 4가지 농가소득 유형(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중 ‘농업외소득’을 의미함.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 i) 2023년 기준 전체 **농업외소득**이 농가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은 39.3%로 전체 농가소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 농업소득(21.9%) 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ii) 반면, **농업소득**은 2022년에 크게 감소했다가 2023년에 반등했지만, 전체 농가소득 대비 비중은 여전히 비중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이는 농가의 생계 기반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으며, 농업외소득이 농
촌경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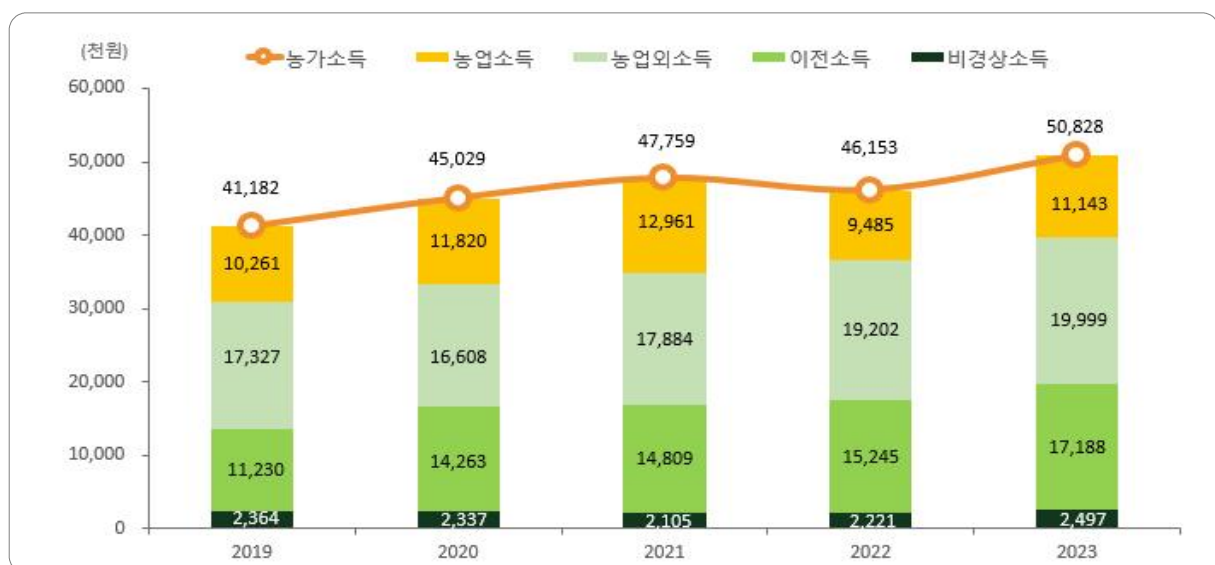
【최근 5년간 소득 종류별 농가소득, 2019-2023】

(단위: 가구당, 천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구성비	('22/'21)	('23/'22)
농 가 소 득	41,182	45,029	47,759	46,153	50,828	100.0	-3.4	10.1
- 농 업 소 득	10,261	11,820	12,961	9,485	11,143	21.9	-26.8	17.5
- 농 업 외 소 득	17,327	16,608	17,884	19,202	19,999	39.3	7.4	4.2
- 이 전 소 득	11,230	14,263	14,809	15,245	17,188	33.8	2.9	12.7
- 비 경 상 소 득	2,364	2,337	2,105	2,221	2,497	4.9	5.5	12.4

※자료: 통계청,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소득 종류별 농가소득 추이, 2019-2023】



※자료: 통계청,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한편, 최근 농촌지역의 일자리 및 경제적 기회 부족 등으로 청년층이 농촌에서 이탈함에 따라 농가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연령별 농가인구(2020년~2023년)】

(단위: 천 명, %)

구분	계	10세 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0	2,314	51	108	132	104	176	422	642	679
	(100.0)	(2.2)	(4.7)	(5.7)	(4.5)	(7.6)	(18.3)	(27.7)	(29.3)
2021	2,215	41	91	100	80	149	373	661	720
	(100.0)	(1.9)	(4.1)	(4.5)	(3.6)	(6.7)	(16.8)	(29.9)	(32.5)
2022	2,166	35	82	90	76	132	342	653	756
	(100.0)	(1.6)	(3.8)	(4.2)	(3.5)	(6.1)	(15.8)	(30.2)	(34.9)
2023	2,089	28	78	79	69	115	312	640	767
	(100.0)	(1.4)	(3.7)	(3.8)	(3.3)	(5.5)	(14.9)	(30.7)	(36.7)
증 감	-76.8	-6.4	-4.2	-10.9	-7.2	-17.3	-29.8	-12.8	11.8
증감률	-3.5	-18.5	-5.1	-12.1	-9.4	-13.1	-8.7	-2.0	1.6

※자료: 통계청, 2020~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재구성

이러한 농촌 청년층 감소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농촌 이탈 방지 및 농촌활력 제고를 위해 농촌 청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청년층의 농외소득 증대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13조는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농촌 여성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일정한 심사와 등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의 농외소득 창출 사업은 사업성과 신뢰성이 일정 부분 입증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런데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을 현행법 제13조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자금 등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청년농업인을 그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중인 청년농업인 대상사업을 살펴보면, 영농 정착사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선임대후매도, 농지매매 등 영농에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으로,

이와 관련한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할만한 사업성과 신뢰성이 있는 농외소득 창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향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농식품부 수행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단위: 명)

사업명	사업개요	비고 (예산기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사업목적)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도모 ○ (사업기간) '18년~계속 ○ (지원대상) 독립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만 40세 미만)	선정인원 5,000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사업목적) 고령, 은퇴, 이농 및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 은행이 매입하여 청년농 등에 장기임대지원함으로써 농지 시장 안정 및 농업인력구조개선 기여 ○ (사업기간) '10년~계속 ○ (지원대상) 농업인	물량 2,500ha
선임대후매도	○ (사업목적)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 희망 농지를 매입하여 최장 30년 동안 임대 후에 매도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 마련 지원 ○ (사업기간) '23년~계속 ○ (지원대상) 청년농(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물량 40ha
농지매매	○ (사업목적) 전업농 육성 및 농업인력구조 개선, 농지이용 활성화 ○ (사업기간) '90년~계속 ○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등	물량 380ha
청년농촌보급자 리 조성	○ (사업목적)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및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 ○ (사업기간) '19년~계속 ○ (지원대상)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가구 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1명 이상 자녀 양육 가정	신규 8개소 선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융자지원)	○ (사업목적)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해 농업인 및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반구축 및 운영자금 지원(융자) ○ (사업기간) '81년~계속 ○ (지원대상) 영농경력 10년 이하인 농업인(만 50세 미만)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24년 5,000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자('24년 1,000명)에는 40세이상~50세 미만 인원도 포함되어 있음	선정인원 6,000명

따라서 청년농업인에 대하여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한편, 현재 전체 농업인 중 청년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0.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농과 그 외 농업인 사이의 지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전체 농업인 중 청년농업인 비중】

2019	2020	2021	2022	2023
0.7	1.2	0.8	0.7	0.5

* 출처: 농림어업조사(통계청)

아울러 현행 「농외소득법」 제13조를 근거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여성농업인’에게 우선지원하고 있는 정책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수용되더라도 실질적인 청년농업인의 우선지원은 별도의 정책사업이 추진되어야 가능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7